전자약정 업무처리요강

제　　정 : 2026. 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대고객 편의 증진과 직원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종목에 대한 전자약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2.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3. 수출신용보증(매입)
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5. 수출신용보증(Nego)
6. 수입보험(금융기관용)·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제2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서면“이란 종이 형태의 문서를 말하며, ”서면약정“은 서면에 약정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식“이란 각종 디지털기기(PC, 스마트폰 등) 및 공사 플랫폼(업무계시스템, K-SURE ON 등) 간의 업무 관련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만들어진 서식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5. ”약정인“이란 제1조의 종목 내규에 따른 채무자와 책임경영이행약정인을 말하며, 연대보증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전자약정”이란 약정인의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서식상의 각종 무역보험 약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하였고 그 시점 이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약정서“란 전자서식에 전자서명과 시점확인 정보가 결합된 전자문서를 말하며,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증방법을 이용한 경우 수집된 약정인의 인증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9.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를 등록·저장하고, 조회·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약정의 대상 등) ① 제1조 종목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 업무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입보한 경우나 약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등 기타 전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약정한다.

1. 수입보험 또는 신용보증 약정서
2. 책임경영이행약정서 및 자금용도 준수의무 확약서

② 약정인이 제8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할 수 있다.

1. 범용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③ 전자약정 운영가능시간은 체결 지역의 현지 시각 기준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약정인이 해외 지역에서 전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제9조를 따른다.

제2장 전자서식 및 전자문서의 관리

제4조(전자서식과 전자문서의 운용) 전자서식과 전자문서를 신설·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존 서식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
2.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적용 여부 등

제5조(전자문서 송부)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완료된 전자문서는 전자우편 등 디지털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송부하되, 시스템장애 등의 이유로 불가할 시 그 사본을 직접 교부 또는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약정 운영 및 관리

제6조(약정절차) ① 업무담당자는 약정인에게 서면약정 또는 전자약정 절차 방식을 사전 안내하고, 약정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하나의 약정서에 대해 서면약정과 전자약정의 혼용된 형태로 체결할 수 없다.

② 전자약정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면 방식은 약정인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적 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식에 직접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대면 방식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약정인 본인의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제3조제2항의 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전자약정은 보증서(보험증권) 발급건별로 체결하며, 주채무의 성격상 수차례에 걸쳐 보증서(보험증권) 발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없다.

④ 약정이 완료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전자문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전산 업무계시스템 약정서 관리 화면에 등록 관리한다. 전자약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약정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시점확인에 필요한 전자적 처리가 끝난 경우를 의미한다.

⑤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약정서는 고객별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보관·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면전자약정) ①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본인임이 확인된 약정인이 자필서명하거나 본인소유 인감을 인감스캐너로 전자날인하는 방식으로 대면전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보증(보험)한도와 보증(보험)기간 등 보증서(보험증권) 기재사항과 약정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약정인의 본인 여부
3. 기명이 자필인지 여부
4. 날인된 인영이 약정인의 것인지 여부

5. 시점확인을 증명하는 진본확인 마크가 정상인지의 여부

③ 약정인이 자필서명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약정 시 입수되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원본은 스캔하여 약정화면에 등록하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약정서 출력본과 함께 서면 약정서를 보관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한다.

제8조(비대면전자약정) ① 당사자 본인임이 확인된 약정인이 K-SURE ON에 접속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으로 비대면전자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약정인이 공동대표 법인기업인 경우, 대면전자약정 방식은 공동대표 인감 모두를 날인하여야 하나, 비대면전자약정 방식은 제3조제2항의 법인 고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전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전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보증(보험)한도와 보증(보험)기간 등 보증서(보험증권) 기재사항과 약정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약정인의 인증정보
3. 시점확인을 증명하는 진본확인 마크가 정상인지의 여부

③ 제3조제2항의 인증서 발급과정에서 본인임이 확인됨에 따라, 별도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징구는 생략한다.

제9조(해외 지역 전자약정) ① 약정인이 해외 지역에서 전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의 비대면 방식을 따라야 하며, 공사는 대상거래 및 목적, 준거법령 등이 포함된 별표의 “해외 지역 비대면 전자약정 동의서“를 약정인 별로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 지역 전자약정을 진행하는 약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외 전자서명 진행 전 공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승인
2. 해외 전자서명 완료 후 지체 없는 사후 통지
3. 서명 당시 접속 로그(IP, 국가, 시간 등)의 공사 수집 및 보관(5년)에 대한 동의

③ 공사는 제1항의 동의서 내용을 해외 지역 전자약정 진행 전 약정인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약정인이 별표의 “해외 지역 비대면 전자약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외 지역 전자약정 진행은 제한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조의 종목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제 정)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6년 11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산개발 완료 후 AI·디지털총괄실장의 별도 통보일로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제2호부터 제6호의 전자약정 대상 종목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른 해외 지역 전자약정에 관한 사항

② (관련 지침의 폐지) 이 요강의 시행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전자약정 업무처리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해외 지역 비대면 전자약정 동의서

해외 지역 비대면 전자약정 동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 귀중
본인은 공사와 제1조의 대상거래(이하 "본계약"이라 함)에 관한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이 해외 지역에서 전자약정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1. 대상거래 및 목적

아래의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함에 따른 전자약정의 효력 및 이에 관한 본인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보증) 채무자		금융기관 등	
보험(보증) 종목		증권(보증서) 번호	
보험(보증) 한도		보험(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본계약의 보험증권(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름

2. 준거법령 및 소송관할

① 본계약과 관련한 전자서명행위 방법, 약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약정의 성립·유효성·효력, 그리고 본인의 불법행위 유무 등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또한, 본계약(약정 체결 포함) 관련하여 공사와 본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재판 관할은 대한민국의 공사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3. 전자약정의 효력

① 본인은 해외 지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전자약정 및 전자약정의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② 본계약 전체 약정대상 중 해외 지역에서 진행한 일부 전자약정에서 결함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는 본계약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4. 부인 방지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의 위·변조, 강박, 체류 국가의 현지 법률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전자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본계약 효력 등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5. 사전 승인 및 사후 통지 의무

① 본인이 해외에서 전자약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사에 알려 반드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겠습니다.

② 해외 전자약정 진행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완료 사실을 사후 통지하겠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공사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6. 요청에 따를 의무

공사는 해외 지역 전자약정 진행 오류 또는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러한 요청에 따르겠습니다.

7. 정보 보안 사고 관련 면책

해외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전자서명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장애나 해킹, 피싱 등 인터넷 보안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이 유출되어 입은 피해나, 약정 체결의 장애 등 그에 따른 모든 손해는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8. 접속 로그 등 보관 동의

본인은 공사가 해외 지역 전자약정 당시의 본인의 접속 로그 정보(접속 IP, 국가, 시간 등)를 수집하여 전자약정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9. 추가약정의 우선적용

상기 동의내용은 본계약에 부수하여 적용되며, 해외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본계약과 해당 동의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0 년 월 일

<table>
<tr><td colspan="3">※ 본인은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안내를 받았으며, 해외 지역 전자약정 체결에 따른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여 서명합니다.</td></tr>
<tr><td colspan="2">본 인(약정인) : ㊞
주 소 :
기업명 :</td><td>확 인 란</td></tr>
<tr><td>법인(주민)등록번호</td><td>－</td><td></td></tr>
</table>